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8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6.

발 의 자:이종배·강승규·이성권

김성원 • 김형동 • 김재섭

엄태영 • 박덕흠 • 김예지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명예를 기리는 한편,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,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,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,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국가보훈 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 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 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----. <단서 삭제> 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 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│ <삭 제> 원에 관한 법률 | 제4조제1항 제4호・제6호・제7호 또는 제 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u>같은 법 제11조에</u> 따른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| <삭 제> 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

지급받는 경우
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<삭 제>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
② ~ ⑦ (생 략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